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1999. 1. 2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에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사항은 삭제되고 대신 호적법시행규칙에 부과기준,절차,기간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있어 우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사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3. 관계법령

호적법 제13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